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01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강준현 · 최기상

강훈식 • 민병덕 • 김한규

황운하 · 노종면 · 윤준병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, 그 중 "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(刑)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"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4조제2항,

제86조제3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"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 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)"로 한다.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 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)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(집행유예를 포함한 다)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 ①	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	
되지 못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 또는 <u>「금융소비자 보</u>	3 <u></u> 「금융소비자 보
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	호에 관한 법률」, 「보험사
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	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
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	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	<u> 경우만 해당한다)</u>
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	
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
4. 이 법 또는 <u>「금융소비자 보</u>	4 <u>「금융소비자 보</u>
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	호에 관한 법률」, 「보험사
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	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
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	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
있는 자	<u> 경우만 해당한다)</u>

5. ~ 10. (생략)

③ (생 략)
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 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 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 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④ (생 략)

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③
<u>다만, 제1항제1호 및</u>
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
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
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